

## 능력주의와 평등

장 지 연\*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건전한 상식의 힘에 기대어 비정규직 관련법에 차별시정 기능을 요구하고,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작은’ 해석의 차이는, 이로 인하여 세상이 둘로 나눌 수도 있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평등의 문제를 논할 때, 실제로 우리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개념은 ‘형평성(equity)’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용시의 성·연령차별, 유리천정..... 이 모든 논의들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행위가 능력주의(meritocracy)나 업적주의의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100명 중에서 80명에게만 취업기회를 줄 수 있다면 가장 유능한 순서대로 8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은 20명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후생의 총량(또는 평균적인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는 ‘대의’에 부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평등마저 후생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평등의 의미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 차원에서 평등을 정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평등을 효율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차별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기업이 취향이나 편견에 휘둘려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하는 기업의 ‘제살 깎아먹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쟁의 어떤 부분이 불완전하길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평등을 효율로 환원시켜 놓은 시각에서 볼 때에는 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능력주의를 적용하는 관행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연공급제 하에서 경력이 오랜 사람을 먼저 해고하는 일, 출산을 앞둔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관행이 차별이 아니라는 강변에 대답하지 못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chang@kli.re.kr).

평등개념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은 현재 주어진 조건, 즉 구조적 제약조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보는 것이다. 능력주의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경쟁방식(merit system)이 진정한 능력주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의 일부 계층이 제도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거나, 남성기배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여성이 의사소통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들은 능력주의의 시험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결정체계나 조직운영 방식,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면 ‘능력’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차별과 배제의 기제들은 각각 일회적으로 작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구조화된다.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차별관행이 낳은 구조적 차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땅고르기(leveling the playground)’ 또는 ‘출발선 맞추기’로서의 적극적 차별해소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요구된다. 편견이나 악의적인 차별의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규칙, 절차 등은 역사적으로 지배집단의 행동양식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을 따를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발선을 똑같이 맞추고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해보자는 이러한 주장은 어찌보면 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능력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를 침해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만을 평등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것은 평등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넘어가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의 평등권은 시민권의 한 차원이다. 즉, 차별은 시민권에 대한 침해이며, 차별해소의 과정은 시민권 부여의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과 특정 대상의 사회권 제약을 완화해 나가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KLI**

불평등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부도덕한** 것이므로, 나는 유토피아적인 **지위와 기회의 평등**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모든 방도를 지지한다(Lipset, 1962; 강조는 원저자).